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경영 의원 발의 】

의안번호 2764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경영 의원 외 14명 발의
- 나. 제안일 : 2021. 10. 13.
- 다. 회부일 : 2021. 10.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뉴딜일자리 등 자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그에 관한 기반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한시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이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취업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재편에 대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근거의 마련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안 제3조제3호 신설)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는 내용임.
-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민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제3조제1항)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향상(제3조제2항)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2항1)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상위법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안 제4조의 2 신설)

- 개정안은 장애인취업정책을 위한 조사연구를 규정하고 있음. 이때 조사연구에는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이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시라는 대도시 권역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의 장애인 욕구에 특화된 관련 연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개정안의 신설조항 중 민·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제3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제4호)는 서울형 장애인 취업정책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춘 장애인 일자리 정책(안 제7조제1항 제4호 신설)

- 현행 조례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열하고 있음.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3.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 개정안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생략)</p>	<p>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①</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교육 지원 및 시범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이는 장애인 일자리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정책적 검토

- 중앙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이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구분	디지털 뉴딜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대상	고용 취약계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사업시기	2020~2025
사업내용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가공

- 중앙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이 2020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다수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발달장애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 이외에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현황>

2021년 9월 기준

일자리 유형	참여 인원	연령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3,406	25	632	429	479	587	1,254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996	2	95	105	154	255	385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430	5	71	52	56	80	166
복지형 일자리	1350	16	251	176	171	187	549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0	0	1	5	2	10	102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90	2	57	23	6	2	0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25	0	15	2	6	1	1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자립지원과)	24	0	12	4	4	3	1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42	0	3	2	14	10	13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22	0	22	0	0	0	0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32	0	21	11	0	0	0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시간제)	158	0	49	22	41	24	2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복지형)	117	0	35	27	25	15	15

- 더욱이 현재 제공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단기고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같은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실적이 실적을 위한 실적마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산업구조의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단순노무 위주의 장애인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 기술숙련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지현황>

2021년 9월 기준

일자리 유형	참여인원	근무기간 (개월)	임금 (천원)	2회이상 (연속참여)
합계	3,406			1,613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996	12	1,822	518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430	12	911	174
복지형 일자리	1,350	12	488	738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0	12	1,156	79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90	12	1,142	59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25	12	688	9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자립지원과)	24	10	2,023	5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42	12	1,761	0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22	11	1,173	11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32	6	920	0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시간제)	158	9	911	10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복지형)	117	9	683	10

4 종합의견

-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류민국 입법조사관 (02-2180-8140)